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의 안정화를 위해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'25. 1. 1.에서 '27. 1. 1.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 중 “2025년 1월 1일”을 각각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	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 정규정은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. ----- ----- <u>2027년 1월 1일</u> ----- -----.